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7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박충권

박정하 • 박준태 • 김상훈

강승규 · 정동만 · 김승수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 · 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규모·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 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 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

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실시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태통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1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
				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
				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
				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
				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
				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u><신 설></u>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
				항에 따른 조사 실시결과를 검
				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
				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 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 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저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태통로 설치계
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계획 등의 보
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
조정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⑦</u>
<u>설치</u>
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u>.</u>
세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
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신 설>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u>입력</u> . <u>다만, 생태통</u>
로 설치・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생태통로에 대한 조사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
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u>다.</u>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______,